국유재산 대부(임대) 절차 안내

국유재산 대부(임대)

국유재산 전문관리기관인 캠코는 기획재정부(총괄청)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을 관리·처분하며, 다음과 같이 국유재산을 대부(임대)하고 있습니다.

근 거 국유재산법 제41조, 제46조 및 제47조

대부방법은 이렇습니다

원 칙 온비드를 통한 일반경쟁입찰

예 외 (근거: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, 제51조)
- 주거용, 경작용, 재산 공유자, 6개월미만 단기사용 등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 허용

대부기간

재산의 유형에 따라 각 기간 내에서 결정

20년 이내	10년 이내	5년 이내	1년 이내
조림목적, 토지 및 정착물	시설보수 건물 (대부자 부담)	조림 목적 이외 토지 및 정착물	그 외 재산

대부료

(산출방법) 재산가액 x 대부료율

1% 이상	2% 이상	2.5% 이상	3% 이상	4% 이상
경작, 목축, 어업용, 임업용·육림업	주거용	행정목적 (지자체), 사회복지, 종교	소상공인	공무원 후생

대부계약은 이렇게 체결됩니다

1 대부신청서 제출/접수
수의계약의 경우 신청서를 우선 제출한 자 대상으로 대부가능 여부 검토
–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결정 가능

2 대부심사
낙찰(신청) 물건 및 사용목적 확인
– 재산관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대부 허용
– 대부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은 불허되고 낙찰물건의 보증금은 국고 귀속

3 대금납부
사용·수익 시작 전 가상계좌 또는 지로를 통한 선납 원칙
– (잔대금 납부)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, 미납시 낙찰 취소 및 보증금 국고 귀속
– (연체료) 연체시 최고 연 10%의 연체료 부과 및 재산 압류 등 불이익 발생(시행령 제72조)

4 계약체결
대부계약시 준비서류
개인 ❶ 신분증 법인 ❶ 법인등기부등본 ❷ 법인인감증명서
※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(본인 인감증명서 첨부)을 제출해야 하며, 낙찰물건은 '대부신청서' 제출 생략

5 계약서 교부
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방문 없이 계약서 작성, 계약체결 및 계약서 출력·보관 가능

대부계약 해지사유는 꼭! 확인하세요

❶ 국가·지자체가 공용·공공용으로 사용
❷ 사용목적의 위배
❸ 대부재산에 승인 없는 시설물 설치
❹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 처분
❺ 대부재산의 원상변경
❻ 대부료 연체 등

국유재산을 불법사용(무단점유, 전대, 용도 외 사용)하는 사실을 발견하신 경우, 캠코 홈페이지(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) 및 상담전화(☎1899-0096)로 신고해 주세요